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사본”을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생년월일”을 “전체 근로자 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	1주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추가 연장근로 실시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연장사유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소재·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했거나 할 예정인 조치를 적습니다. [예시] ・(건강조치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함(공통으로 권고함)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연속휴식에 관한 사항) ▲추가 연장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동안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추가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속한 휴식시간을 부여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고
고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게 함.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0-8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전파법」 제58조의8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효력,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가. 대한민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전자파적합성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나. 영국

자유무역협정 제2장 부록 2-나-1의 1-가의 유럽연합 지침(이하 '유럽연합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자재

2. 적용기준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가 적용할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기준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95호, 2019. 12. 5.)

2) 전자파적합성 기술기준

가) 전자파적합성 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29호, 2018. 12. 24.)

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28호, 2018. 12. 24.)

나. 영국을 대상으로 1-나의 기자재를 공급하려는 대한민국의 공급자는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관한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3. 적합성평가 절차

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가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을 공급하려는 영국의 공급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이 경우 국내 대리인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전자파적합성 기준만 적용되는 경우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적합성평가 고시'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전파법 제5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3의 적합등록 절차를 따른다. 다만,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는 다음의 서류들로 대체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

(2)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2-나 제3조나호2)목에 따라 영국에 의하여 통보된 영국 내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3) 사용자설명서 : 제품 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은 적합성평가 고시 별표 4의 사용자 안내문을 포함하여야 한다.